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5
------	---

제출연월일 : 2026. 8. 11.

제 출 자 : 송파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추진하는 사무로서,
- 나.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치료·재활,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자살예방 등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 중인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12.31.에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위해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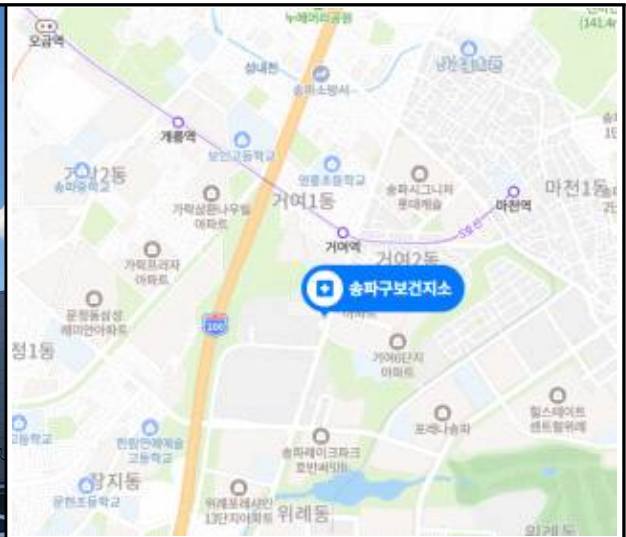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 소 재 지 : 송파구 양산로 5, 보건지소 2층
- 시설규모 : 연면적 238㎡, 대지면적 1,194.6㎡
- 시설용도 : 공공업무시설
- 운영인력 : 22명(센터장 1, 상임팀장 1, 팀장 3, 팀원 17)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외관 전경



위치도



센터 내부 (프로그램실 / 복도 / 휴게실)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27. 1. 1. ~ 2029. 12. 31.) - 재위탁
- 소요예산 : 연간 1,411백만원(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 2026년 예산 기준
- 위탁사무 :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치료·재활에 관한 업무
 -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개입에 관한 업무
 -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시도자, 자살 유가족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상담에 관한 업무
 - 지역정신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 : 원안 채택('26. 7. 15.)

-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센터 운영과 사업 추진에 관하여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을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라. 수탁자 선정방법 : 재위탁

마. 민간위탁 필요성

- 민간의 역량 있는 기관을 통한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대
-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 위탁을 통하여 정신건강 분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

바. 향후 계획

- 수탁자 선정 구의회 서면보고 : '26. 11월 중
- 위·수탁 협약체결 : '26. 12월 중

사. 관련 법규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제6항
-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관련법규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 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의 형태)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03.15.>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21, 2021.03.15.>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3.6.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한다. <개정 2011.12.12, 2013.6.20>
-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하고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 ④ 구청장은 제4조의2제2항의 심사대상 사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할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20, 2014.10.23>
- ⑤ 제4조의2제2항의 심사대상이 아닌 사무를 재위탁할 경우에는 소관 업무담당부서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0.23>